

제4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2.15 (수) 16:00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**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박문희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4조)
- 나. 폐지된 법령 삭제(안 제9조제1항제3호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, 폐지된 법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